

##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감독체계\*

### A Study on Data Protection Laws and Supervisory Bodies in Europe

김 봉 수\*\*  
Kim, Bong-Su

#### 목 차

- I. 서 론
- II. 유럽연합
- III. 독 일
- IV. 프 랑 스
- V. 영 국
- VI. 소 결 및 시사점

#### 국문초록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영국은 동일한 지침이나 법률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해서 모두 적용하고 있고, 개인정보를 관리·감독하는 독립된 전담기구를 두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해당 기관에 높은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라는 목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관리·감독기구의 인사상·조직상 독립성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개인정보 관련 법제와 인사 및

논문접수일 : 2015. 11. 15.

심사완료일 : 2015. 12. 07.

게재확정일 : 2015. 12. 07.

\* 이 논문은 2013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 법학박사·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조직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의 강력하고도 명확한 권한과 책임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권한 강화와 더불어 독립성의 강화가 중요하다. 셋째, 개인정보보호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담당자들에게 필요한 권한과 자원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가 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개인정보보호 담당 조직 내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화형성과 책임성 강화가 중요하다. 다섯째,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위탁관계에서 책임성 강화를 위한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정부기관의 관련 단체나 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강화되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에 제3의 기관이나 단체 등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주제어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감독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럽 연합의 개인정보보호지침

## 1.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각국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과 그러한 법률들의 시행 및 집행을 위한 감독기구들을 마련에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1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성격을 가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마련하였고, 동법의 시행 및 집행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sup>1)</sup>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정보유출사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그 감독기구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업무의 분배·운영, 개인정보보호법의

1) 동 위원회는 과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한 국무총리 소속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사위원회를 승격하여 기능을 확대·개편한 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집행을 담당하는 기구의 독립성과 권한의 관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선진적 입법으로 평가받고 있는 유럽연합과 유럽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감독체계를 살펴봄으로써, 관련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다만 이들 국가들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들이 일부 존재하므로,<sup>2)</sup> 본 논문에서는 가능한 한 선행연구들과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특히 개인정보보호 감독체계 및 감독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 유럽연합(EU)

### 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 가. 개인정보보호의 법제의 연혁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는 크게 ‘근본규범’과 ‘구체적 법제화’를 통해서 실현된다. 우선 근본규범은 개인정보보호를 기본권의 범주에서 파악하고 이를 추상적인 수준에서 선언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sup>3)</sup> 제8조(개인정보의 보호), 유럽연합조약<sup>4)</sup> 제6조 및 제39조,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舊 유럽공동체조약, 이하 ‘유럽연합 기능조약’)<sup>5)</sup> 제16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1990년대 각 유럽회원국 내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화는 통일적인 법률에 의해 규율되지 않았다. 즉 각 회원국의 법제도가 유럽이사회의 「사적정보의 자동화 처리와 관련된 개인의 보호를 위한 협약」<sup>6)</sup>에서 규정하는 원칙들에 동일하게 기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

2) 대표적으로 이민영 외, 해외 개인정보보호 집행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주요 동향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2.

3)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2000/C 364/01).

4)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TEU).

5)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6)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로가 상당히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서로 간의 공정한 경쟁 뿐만 아니라 유럽 내 시장의 원활한 기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통일된 환경에 대한 요구 내지 압박이 가중되었다. 더욱이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은 일반적 정보보호법의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켰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럽연합은 1995년 10월에 「EU 개인정보보호 지침」(Directive 95/46/EC)<sup>7)</sup>을 채택했으며, 동 지침은 오늘날까지 유럽 내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그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 지침은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조건, 정보주체의 권리 및 정보의 질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그 첫 번째 목적으로 하고, 동시에 각 회원국들 내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동일하게 수립함으로써, 회원국들 상호 간의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을 그 두 번째 목적으로 하고 있다(지침 제1조 1항 및 2항).<sup>8)</sup>

「EU 개인정보보호지침」에 의해 충분히 규율되지 않는 전기통신영역을 위해서 1997년 12월에 「전기통신에서의 개인정보처리와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관한 지침」(Directive 97/66/EC)<sup>9)</sup>이 마련되었고, 2002년 7월에는 이 지침을 한층 수정·발전시킨 「전자통신 개인정보보호 지침(Directive 2002/58/EC)」<sup>10)</sup>이 채택되었다. 위 두 지침을 통해 마침내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 내 정보보호의 일반적이고 기술 중립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가 여전히 유럽의 조직 및 기관의 수준에서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舊 유럽공동체조약 제286조」<sup>11)</sup>가 채택되었고, 그 내용은 2000년 12월 「공동체의

Data (ETS No. 108, 28. 01. 1981).

7)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s of Personal Data and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Directive 95/46/EC).

8) 동 지침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데 특징이 있다(김상찬·강재정, “빅데이터 시대의 온라인 마케팅과 개인정보 보호”, 「법과정책」 21권 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5, 111쪽).

9) Directive 97/6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December 1997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10) Directive 2002/5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July 2002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tor (Directive on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개인정보보호 규칙」(Regulation (EC) No 45/2001)<sup>12)</sup>을 통해 구현되었다. 이러한 지침의 조합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정보처리에 책임이 있는 자들의 의무를 하나의 법적 기구 내로 재편시켰고, 이에 따라 공동체의 기관 및 단체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감시할 책임 있는 독립된 감독 당국으로서 유럽연합 정보보호 감독기구(EDPS)를 탄생시켰다.<sup>13)</sup>

#### 나. 「개인정보보호규칙」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최근의 동향 가운데 단연 주목할 만한 점은, 2009년경부터 유럽이사회(The Council)와 유럽의회(the European Parliament)에 의해 당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평가와 향후 조치에 대한 보고서의 요구 및 1995년 「EU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대한 개정 촉구가 있었고, 이 같은 요청에 발맞추어 유럽위원회(The Commission)가 두 차례의 협의를 거친 후, 마침내 2012년 1월 25일에 유럽연합 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범을 포괄적으로 개혁하는 이른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개인의 보호 및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규칙」(이하 'EU 개인정보보호규칙')의 초안<sup>14)</sup>을 공표했다는 점이다.<sup>15)</sup> 동 초안이 공표된 이후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동 초안의 수정안(2013년 1월, 5월) 및 절충된 수정안(2013년 10월) 등을

11)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TEC).

12) REGULATION (EC) No 45/20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0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by the Community institutions and bodies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13) "Decision No 1247/200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of the Council and of the Commission of 1 July 2002 on the regulations and general conditions governing the performance of the European Data-protection Supervisor's duties" 참고.

14)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COM(2012)11 Final.

15) 자세한 내용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EU 및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및 감독체계 개편내용 분석", 2014. 12. 26-28쪽 참고.

제시했고, 유럽위원회는 (이들에 기초한) 동 규칙의 2015년 내 완성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2015년 10월 현재 여전히 동 규칙의 최종본이 확정되지 않고 있으며,<sup>16)</sup> 다만 현재 진행경과를 보건대 늦어도 2016년 상반기까지는 완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sup>17)</sup> 「EU 개인정보보호규칙」의 목적은 무엇보다 디지털 환경에서 각 개인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데 있고, 규정내용으로 보면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규율을 추가하였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규칙 제1조 1항). 이 밖에도 동 규칙은 지침(Directive)이 아닌 규칙(Regulation)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보다 일반적이고 직접적인 적용성과 전체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1995년의 「EU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2조 (b)호 상의 정보를 삭제(erasure)할 권리에 더해서 새로운 권리인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규칙 제17조), 단일화된 감독기구로서 유럽정보보호위원회(the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규칙 제64조 이하), 동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보다 강력한 제재, 즉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규칙 제79조 6항)<sup>18)</sup>는 점에서도 특징이 있다.<sup>19)</sup>

## 2.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인사 및 조직

### 가. 규율 체계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독기구의 인사 및 조직은 유럽연합의

16) 이와 관련하여 예컨대 EDPS NEWSLETTER No. 45, August 2015([https://secure.edps.europa.eu/EDPSWEB/webdav/site/mySite/shared/Documents/EDPS/PressNews/Newsletters/Newsletter\\_45\\_EN.pdf](https://secure.edps.europa.eu/EDPSWEB/webdav/site/mySite/shared/Documents/EDPS/PressNews/Newsletters/Newsletter_45_EN.pdf)) 참고.

17) HUSTON & WILLIAMS, THE PROPOSED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A guide for in-house lawyers, June 2015, p. 3.

18) 동 규칙의 위반 시에 위반사항의 중대성에 비례해서 최고 1백만 유로 또는 회사의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의 2%의 과태료가 행정제재로서 부과된다.

19) 함인선, "EU개인정보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통권 제133호(2012. 12), 5쪽 참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성격을 가지는 1995년의 「EU 개인정보보호지침」에 의해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다. 물론 2002년의 「전자통신 개인정보보호지침」도 중요한 지침이지만, 이 지침은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전자통신영역에 한정하여 반영·구체화하고 있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따라서 전자통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인사 및 조직 체계 역시 「EU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르고 있으므로, 내용적으로 차이가 없다.<sup>20)</sup> 그러나 2012년 1월 25일에 제안된 「EU 개인정보보호규칙」이 예정대로 2015년에 완성되고 발효될 경우,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인사 및 조직 체계는 상당히 다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여전히 일반법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1995년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인사 및 조직 체계에 관하여 살펴본 후, 완성되고 발효될 경우 현 체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2012년 1월 25일의 「EU 개인정보보호규칙」상의 인사 및 조직 체계에 대하여 전자와의 대비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 나. 「EU 개인정보보호지침」상의 인사 및 조직 체계

1995년 「EU 개인정보보호 지침」에서 규정하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인사 및 조직으로는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유럽위원회, 동 지침 제28조상의 감독당국, 동 지침 제29조 상의 개인정보보호 작업반과 동 지침 제31조상의 위원회(이하 ‘정보보호위원회’)가 있다.

##### (1) 유럽의회(the European Parliament)와 유럽이사회(The Council)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무엇보다 유럽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 작업반으로

20) 특히 2002년의 「전자통신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15조 3항에 따르면, 동 지침에 의해 다루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1995년 「EU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9조에서 정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 개인의 보호에 관한 작업반(Working Party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이하 ‘개인정보보호 작업반’)이 동 지침 제30조에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보호 작업반은 전자통신의 범주 내에서 기본적 권리와 자유의 보호 및 정당한 이익의 보호라는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부터 보고서를 제출받고(지침 제33조 및 제30조 6항), 유럽위원회가 즉시 적용할 조치를 채택하였으나, 이들 조치가 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유럽이사회는 가중 다수결로 다른 결정을 취할 수 있다(지침 제31조 제2항). 그 외에 유럽이사회는 (또는 유럽의회와 연대하여) 입법권을 행사한다.<sup>21)</sup>

(2) 유럽위원회(The Commission, 집행위원회)

유럽위원회는 동 지침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관련 규정의 준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즉 동 지침 내에서 유럽위원회는 강력한 조치임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실현하게 된다. 특히 회원국의 제3국에 대한 개인정보이전과 관련하여 제3국이 보호의 적절한 수준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이른바 표준 계약 조항이 충분한 보호장치를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지침 제25조, 제26조). 나아가 유럽위원회의 대표는 감독당국 또는 당국들의 대표자 및 공동체 기관들을 위하여 설치된 당국 또는 당국들의 대표자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작업반을 구성하고(지침 제29조 2항), 개인정보보호 작업반의 사무국을 제공하여야 하며(지침 제29조 5항), 개인정보보호 작업반의 위원장이 부의한 사안을 개인정보보호 작업반이 심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지침 제29조 7항). 유럽위원회에 대해서는 「EU 개인정보보호 규칙」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

(3) 감독당국(Supervisory authority)

감독당국에 대해서는 동 지침 제28조에서 규정한다. 각 회원국은 동 지침에 따라 자신들이 채택한 규정의 자국 영토 내에서의 적용을 감시할 책임을 지거나 이상의 공공당국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규정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에 관한 행정조치 또는 규정을 작성할 때 감독당국과 협의하도록 규정해야 한다(지침 제28조 1항, 2항). 특히 감독당국은 조사권한(접근권한 및 수집권한), 개입권한과 소추 등의 권한을 가지는

21) 유럽연합조약 제16조 1항 및 제39조, 나아가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292조 참조.

반면, 이의가 제기된 감독당국의 결정은 법원을 통해서 항소가 가능하다(지침 제28조 3항). 각 감독당국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자신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에 관한 모든 자 또는 그들을 대표하는 협회가 제기하는 청원을 들어야 하며, 당사자는 청원의 결과를 통지받아야 한다. 특히 동 지침의 제13조(면제와 제한)에 따라 채택된 국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정보처리의 적법성에 관한 검사청원을 받아들여야 하고, 당사자는 검사가 수행되었음을 어떠한 경우에도 통지받아야 한다(지침 제28조 4항). 그 외에 동 지침은 감독당국의 보고서 작성의무(지침 제28조 5항), 각 회원국의 감독당국들 간의 협력의무(지침 제28조 6항) 및 감독당국의 구성원과 직원의 직업상 비밀유지의무(지침 제28조 7항)에 관해 규정한다.

#### (4) 개인정보보호작업반<sup>22)</sup>

개인정보보호작업반에 관해서는 동 지침 제29조와 제30조에서 규정한다. 개인정보보호 작업반은 자문적 지위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기구로서(지침 제29조 1항), 그 구성은 감독당국 또는 당국들의 대표자 및 공동체 기관들을 위해 설치된 당국 또는 당국들의 대표자와 유럽위원회의 대표로 이루어지며, 개인정보보호 작업반의 각 위원은 그가 대표하는 기관이나 당국 또는 당국들에 의해 지명되어야 한다(지침 제29조 2항). 개인정보보호 작업반은 연임 가능한 2년 임기의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이는 감독당국 대표의 단순 다수에 의한다(지침 제29조 4항, 3항).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작업반은 동 지침에 의해 채택된 국내 조치의 통일적 적용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고, 공동체 및 제3국에서의 보호 수준에 관한 의견을 유럽위원회에 제출하며,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자연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 또는 특정의 조치와 그러한 권리와 자유에 영향을 주는 기타 공동체의 조치에 관한 지침의 개정(안)에 대해 유럽위원회에 자문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수준에서 작성된 행동강령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지침 제30조 1항). 또한 자신의 발의로 공동체 내의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자의 보호에 관한 모든 문제에

22) Working Party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대하여 권고할 수 있고(제30조 3항), 특히 공동체 영역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자의 보호의 동등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차이가 회원국들의 법 또는 관행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그에 상응하여 유럽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지침 제30조 2항), 개인정보보호 작업반의 의견 및 권고 등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자의 보호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유럽위원회,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지침 제30조 제4항, 6항).

#### (5) 정보보호위원회(The Committee)

정보보호위원회는 동 지침 제31조에서 규정한다. 정보보호위원회는 유럽위원회에 대한 조력자(assistor)로서,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고 유럽위원회의 대표가 그 의장이 된다(지침 제31조 1항). 유럽위원회가 일정한 조치를 채택하고자 하는 경우 유럽위원회의 대표(의장)는 그 조치의 초안을 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보보호위원회는 의장이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서 정한 기한 내에 그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투표할 수 없으며, 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즉시 적용해야 하는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유럽위원회의 그와 같은 조치가 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유럽위원회는 이를 즉시 유럽이사회에 전달해야 하며, 유럽위원회는 그 전달 일자로부터 3개월 간 결정한 조치의 적용을 연기해야 한다(지침 제31조 2항).

#### 다. 「EU 개인정보보호 규칙」의 인사 및 조직 체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위원회는 2012년 1월 25일의 「EU 개인정보보호 규칙」의 2015년 내 완성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이 규칙이 계획대로 완성·발효될 경우 각 회원국 내에 직접적이고, 또한 모든 회원국에 대해서 일관되게 적용되는 만큼, 시기와 효력의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된다. 우선 동 규칙에서 정하는 인사 및 조직 체계를 1995년의 「EU 개인정보보호 지침」상의 관련 규정들과 비교·대조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면, 동 규칙의 적용에 관한 제1차적 감독기구는 각 회원국 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회원국의

감독당국"이 되며, 이 감독당국에 대하여 유럽정보보호위원회 및 유럽위원회와 협력할 의무가 강제된다. 그리고 1995년의 「EU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9조의 개인정보보호 작업반은 폐지되고, 그에 관한 언급은 동 규칙에 의해 설치된 각 회원국의 감독당국 대표자와 유럽정보보호 감독관으로 구성되는 유럽정보보호위원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동 규칙 안에서는 유럽위원회의 권한이 보다 상세하고 구체화되어 있다. 아울러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행위를 하며, 유럽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연차보고서를 제출받고, 유럽위원회에 대한 권한의 위임취소 또는 유럽위원회가 채택하고자 하는 위임행위에 대한 거부를 통해 그 효력에 영향력을 미치며, 유럽연합조약과 유럽연합 기능조약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권고 및 결정을 채택한다.

#### (1) 감독당국

유럽연합의 각 회원국은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하여, 자연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유럽연합 내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동 규칙의 적용에 대한 감시 및 유럽연합 전체에 대한 일관된 적용에 기여할 책임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감독당국을 지정해야 한다(규칙 제46조 1항; “95 지침” 제28조 참조). 감독당국은 그에게 부여된 의무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며, 감독당국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의무이행에 있어 어느 누구에게 지시를 구하거나 어느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는 안 된다(규칙 제47조 1항, 2항). 각 회원국은 감독청에게 인적, 기술적, 재정적 및 시설관련 지원을 제공해야 하고, 특히 감독청에 대한 재정관리가 감독청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규칙 제5항, 6항, 7항). 그리고 각 감독당국은 해당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며, 다만 개인정보처리가 유럽연합 안에서 관리자 또는 처리자의 설치 행위와 연계해서 이루어지고, 그 관리자 또는 그 처리자가 둘 이상의 회원국에 설치되는 때에는, 동 규칙 제7장에 위배됨이 없이, 그 관리자 또는 그 처리자의 주된 설치 감독당국이 모든 회원국 내에서의 그 관리자 또는 처리자의 처리행위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는다(규칙 제51조; 95 지침 제29조 참조). 그리고 감독당국의 주요한 의무 규칙

제52조 1항에서 정하고 있다.<sup>23)</sup> 이 밖에도 감독청의 의무 (내지 기능)에 관해서 동 조 제2항 내지 6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감독청의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도 규정하고 있다(규칙 제54조). 다음으로 각 감독당국의 주요 권한은 규칙 제53조 1항에서 정하고 있다.<sup>24)</sup> 이 밖에도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영역에 대한 접근권한(제73조 제2항), 규칙위반에 대한 제소권한 및 당해 소송에 대한 참여권한(동 조 제3항 및 규칙 제74조 4항 및 제75조 2항; 95 지침 제22조 참조), 행정상 위반에 대한 제재권한(동 조 제4항 및 규칙 제79조; 95 지침 제24조 참조)을 가진다.

## (2) 유럽정보보호위원회

유럽정보보호위원회는 각 회원국의 감독당국 대표자와 유럽정보보호 감독관으로 구성되고, 하나의 회원국에 둘 이상의 감독당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원국이 그 감독당국들의 공동대표자를 지정해야 한다(규칙 제64조 1항 내지 3항). 이때 유럽위원회도 그 대표자를 지정하여 유럽정보보호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규칙 제64조 4항). 유럽정보보호위원회는 그 구성원 중에서 1인의 위원장과 2인의 부위원장을 선출하며, 임기는 5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제69조 1항, 2항). 유럽정보보호위원회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

23) ① 동 규칙의 일관된 적용에 대한 감시와 보장 및 그 실행, ② 정보주체 등(규칙 제73조)에 의해 제기되는 불만사항의 접수 및 조사와 진행사항에 관한 통지, ③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정보통신기술 등 발전사항의 모니터, ④ 개인정보처리와 개인의 보호에 관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들에 대한 자문, ⑤ 동 규칙 제34조 상의 사전 인가 및 사전 협의, ⑥ 동 규칙 제38조 2항 상의 행동강령 초안에 대한 견해표명, ⑦ 동 규칙 제58조 상의 이른바 “일관성 매커니즘의 준수” 하에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의 승인, ⑧ 유럽정보보호위원회의 활동에 동참 등의 의무.

24) ① 관리자·처리에 대한 위반사항의 통지권한 및 시정명령권한, ② 관리자·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요구를 따르도록 할 명령권한, ③ 관리자·처리자 및 관련 대표자에 대한 정보제출 요구권한, ④ 동 규칙 제34조 상의 사전 인가 및 사전 협의에 대한 보장권한, ⑤ 관리자·처리에 대한 경고권한, ⑥ 규정을 위반한 모든 개인정보의 수정, 삭제 또는 파기를 위한 명령권한 및 그 같은 정보의 습득자에 대한 동일조치 명령권한, ⑦ 개인정보의 일시적 또는 확정적 처리금지권한, ⑧ 제3국 또는 국제기구에 대한 개인정보의 전송 유예권한, ⑨ 각국의 의회, 정부 또는 기타 정치단체 및 일반대중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의 통지권한 등.

며, 다만 유럽위원회의 요구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규칙 제65조 1항, 2항). 유럽정보보호위원회는 동 규칙의 개정을 비롯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모든 쟁점에 대해 유럽위원회에 조언하고, 이슈가이드라인, 권고 및 최고의 관행들의 적용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해 조사하며, 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 유럽위원회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나아가 유럽위원회가 권고를 요청하는 경우 유럽정보보호위원회는 자신이 채택하는 견해, 가이드라인, 권고 및 최고의 관행 등을 유럽위원회와 동 규칙 제87조 상의 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일반에 공표해야 하며, 유럽위원회는 그에 따른 자신의 조치에 대해 유럽정보보호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규칙 제66조 3항, 4항). 또한 유럽정보보호위원회는 자신의 활동 결과를 정기적으로 유럽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유럽연합과 제3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및 유럽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규칙 제67조).

### (3) 유럽위원회(집행위원회)

유럽연합의 행정부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유럽위원회는 유럽통합 관련 조약의 준수를 보장하고, 각종 정책을 입안하며, 유럽연합의 이익을 수호하는 유럽통합의 중심기구이다. 유럽위원회는 임기 5년의 집행위원장 1인과 27인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 총 28인 전체를 “집행위원단”이라고 칭한다. 그리고 유럽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으로는, 첫째, 유럽연합 내에서 국가의 내각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정책의 제안과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권한을 보유한다. 둘째, 유럽연합의 재정을 관리하고, 유럽연합의 공동정책을 회원국 정부와 기업, 개인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한다. 셋째, 유럽연합 내에서 유럽연합조약, 유럽연합 기능조약(舊 유럽연합공동체조약) 및 양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럽연합의 기관들이 채택한 조치들의 적용을 보장하고, 유럽연합의 법규들(지침, 결정, 규칙)이 공동체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준수되는지를 유럽사법재판소와 함께 감독한다. 그 외 긴급조치조항의 운영권을 가지며, 유럽연합의 대표 기능 및 대외협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마찬가지로 유럽위원회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함은 물론이고, 특히 2012년의 「EU 개인정보보호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유럽위원회의 그러한 기능 및 권한은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 일관성 메커니즘과 위임행위 및 실행행위와 관련하여 잘 나타난다.

#### (4) 유럽정보보호 감독관

각 회원국의 감독당국 대표자와 함께 유럽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하는 유럽정보보호 감독관에 대해서는 「공동체의 개인정보보호 규칙」(Regulation (EC) No 45/2001) 제41조 내지 제48조에서 규정한다. 동 규칙은 앞서 언급했듯이, 1995년 이후 유럽연합 내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가 구체화되어가던 초창기에 개인정보보호가 여전히 유럽의 조직 및 기관의 수준에서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채택된 「舊 유럽공동체조약 제286조」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즉 동 규칙의 목적은 유럽공동체조약에 따라서 또는 이에 근거하여 설치된 유럽연합의 기관들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규율하는 데 있으며, 이때 그 집행책임을 유럽정보보호 감독관이 부담하게 된다(규칙 제1조 1항, 2항). 유럽정보보호 감독관에 관한 주요한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럽정보보호 감독관은 동 규칙 제41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된 감독기구로서 설치되며(동 조 제1항),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자연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동 조 제2항). ② 동 규칙 제42조에 의하면 유럽정보보호 감독관 (및 그 부감독관)은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가 임명하고, 임기는 5년이며(동 조 제1항), 중임이 가능하다(동 조 제3항). 유럽정보보호 감독관의 의무는 임기만료, 사망, 사직 및 강제퇴직 등에 의해 종료되며, 다만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또는 유럽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임될 수 있다(동 조 제5항). 그리고 ③ 동 규칙 제43조에 따라 유럽정보보호 감독관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인적, 재정적 자원의 제공은 예산당국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동 조 제2항). ④ 유럽정보보호 감독관은 동 규칙 제4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수행에 있어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고 그 직무를 행해야 하며(동 조 제1항), 어느 누구의 개입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동 조 제2항). 나아가 자신의 의무와 조화되기 어려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재직 중 겸직이 금지되며(동 조 제3항), 퇴직 후에도 다른 직위나 이익을 수용하는 경우 성실

하고 신중하게 행동할 의무를 부담한다(동 조 제4항). ⑤ 동 규칙 제45조에 의해서 유럽정보보호 감독관과 그 직원들은 재직 중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공적 의무의 수행 중 습득한 모든 기밀 정보에 대하여 업무상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한다. ⑥ 그 밖에 동 규칙은 유럽정보보호 감독관의 구체적인 기능을 제46조, 제48조 1항 및 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권한에 대해서는 제47조 1항 및 2항에서 규정한다.

### III. 독일

#### 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개관

독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의 출발은 19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독일의 헤센 주는 세계 최초로 「정보보호법」<sup>25)</sup>을 제정·발효하였고, 그에 따라 이후 몇몇 다른 주들, 예컨대 라인란트-팔츠나 바이에른 등도 정보보호법 및 그에 준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sup>26)</sup> 그리고 1977년에 드디어 연방 차원의 일반법으로서 「연방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BDSG)이 가결되어 197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sup>27)</sup> 「연방정보보호법」은 제정 이후 현재까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쳤는데, 그 가운데 2002년의 개정은 앞서 살펴본 1995년의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국내법화를 위한 개정이었다. 그 외에 독일헌법 제10조<sup>28)</sup> 통신비밀에 관한 기본권 및 제1조 1항 및 제2조 1항에 의해서 인정되는 이른바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하는 특별법으로서 「통신법」(Telekommunikationsgesetz: TKG) 등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다.<sup>29)</sup>

25) Datenschutzgesetz vom 7. 10. 1970, Hess. GVBl. I, S. 625.

26) Taeger/Schmidt, Kommentar zum BDSG, 2010, Einführung Rn. 4.

27) Taeger/Schmidt, Kommentar zum BDSG, 2010, Einführung Rn. 4.

28) 독일헌법 제10조 1항은 서신의 비밀 및 우편과 전신의 비밀은 불가침임을 규정하고, 다만 제2항에서 그 제한은 단지 법률에 근거하여 명해질 수 있고, 제한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또는 연방과 주의 존립 및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경우, 법률은 그 제한이 당사자에게 통지되지 않음을 그리고 법적 구제절차를 대신하여 지명하는 기관 및 보조기관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짐을 정할 수 있다.

「연방정보보호법」은 총 6장(Abschnitt) 48개 조문(Paragraph)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동 법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1항),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적용되고(제1조 2항 및 제2조), 연방의 기타 법률 규정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경우, 이 규정은 동 법의 규정에 우선한다(제1조 3항). ② 동 법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란 신원이 확인되었거나 확인 가능한 정보주체의 인적·물적 환경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제3조 1항), 그 밖에 자동화 및 비자동화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이용에 대해 정의하고(제3조 2항 내지 5항), 나아가 특별한 종류의 정보 등에 관해 정의하고 있다. ③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및 사용은 오직 동 법 또는 기타 법률 규정에서 허용하거나 지시한 경우 또는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으나(제4조 1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협력 없이도 수집될 수 있으며(제4조 2항),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가 수집된 경우 법률이 정하는 소정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제4조 3항). 그 밖에 정보처리자의 신고의무와 그 예외(제4d조 1항 내지 4항) 및 정보보호위원의 평가의무 등에 관해 규정한다(제4d조 5항, 6항). ④ 개인정보를 자동화 처리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정보보호위원을 서면으로 임명해야 하며(제4f조 1항), 동 법은 그 임명요건(제4f조 2항), 정보보호위원의 처우 및 자격의 종료(제4f조 3항), 정보보호위원의 비밀엄수의무 및 그와 관련한 정보보호위원의 권리(제4f조 4항, 4a항), 정보보호위원의 의무수행을 대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지원(제4f조 5항) 등을 정하고 있다.<sup>30)</sup> ⑤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공공부문에서는 관련 정보에 접근하거나 질문할 권리(제19조, 정보주체에게로의 정보제공), 통지를 받을 권리(제19a조), 정보의 정정, 삭제 및 차단권과 이의권(제20조), 그리고 연방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탄원권(제21조)이 규정되어 있고,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통지를 받을 권리(제

29) Munz, Kommentar zum BDSG, 2010, TKG Einführung Rn. 1.

30) 임명된 정보보호위원은 동 법 및 기타 개인정보보호규정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감독청에 자문을 구하거나 그의 조언에 응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개인정보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감독해야 한다(제4f조 1항).

33조), 관련 정보에 접근하거나 질문할 권리(제34조, 정보주체에게로의 정보제공)와 정보의 정정, 삭제 및 차단권(제35조)이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주어진다. 특히 제19조 및 제34조와 제20조 및 제35조에서 정하는 권리는 법률행위로써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제6조 1항). ⑥ 등 법은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제7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sup>31)</sup>

## 2. 개인정보보호 기구의 인사 및 조직

「연방정보보호법」은 제2장 제3절에서 연방정보위원의 선출(제22조), 연방정보위원의 법적 지위(제23조), 연방정보위원에 의한 감독(제24조), 연방정보위원에 의한 제소(제25조), 그 밖에 연방정보위원의 임무(제26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州 감독청과 관련해서는 제3장 제3절 제38조와 제38a조에서 규정한다.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규율영역구분과 관련하여, 현재 독일 16개 州는 각각 개인정보보호 감독청(Aufsichtsbehörde)을 설치하여 州의 공공기관을 그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처리를 감독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일정 부문을 제외하고) 각 州마다 각각의 민간감독청을 따로 설치하여 사적 영역에서의 정보처리를 감독하지만, 베를린, 브레멘과 함부르크 등에서는 州의 감독청이 민간부문에 대해서까지도 감독한다. 반면 「연방정보보호법」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관한 정보처리 규정들까지를 포함하여 규율하고 있다(제2조).

### 가. 연방정보위원

#### (1) 연방정보위원의 선출

연방정보위원은 연방정부의 추천에 따라 연방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으로 선출되며, 선출시점에서 최소한 35세에 달해야 하고, 선출된 자는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제22조 1항). 연방정보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

31) 그 밖에 손해배상과 관련한 배상금의 상한(13만 유로), 기관들의 책임귀속과 소멸시효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8조 3항 내지 6항).

할 수 있다(제22조 3항). 연방정보위원회는 동 법에 의거해서 공법상의 연방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적이어야 하고 오로지 법률에만 구속되지만, 다른 한편 연방정부의 법적 감독에 복종해야 한다(제22조 4항). 연방정보위원회는 연방내무부 산하에 설치되고, 연방내무장관의 직무감독에 구속되며, 자신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받는다. 또한 부서가 연방정보위원회의 동의하에 구성될 수 있고, 그 직원이 의도하는 조치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오직 연방정보위원회의 동의하에서만 전근, 파견 및 재배치될 수 있다(제22조 5항). 연방정보위원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방내무장관은 동 직무의 수행을 위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이때 연방정보위원회는 그러한 지명에 관하여 자문을 하여야 한다(제22조 6항). 그리고 연방정보위원회는 총무부를 비롯한 총 9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sup>32)</sup>

## (2) 연방정보위원회의 법적 지위

연방정보위원회의 공법상의 연방공무원의 지위는 임명장이 인도됨으로써 개시하고 임기의 만료 또는 해임으로써 종료하며, 다만 연방대통령은 확실한 판단에 따라 해임의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연방정부의 사후 요청 또는 제안에 따라 연방정보위원회를 해임해야 한다. 임명종료 사유가 있는 경우 연방정보위원회는 연방대통령이 서명한 해임증서를 수령하며, 해임의 효력은 이 증서가 인도된 때로부터 발생한다(제23조 1항).<sup>33)</sup> 그리고 연방정보위원회는 자신의 직무 외에 기타 유급직을 유지하거나 수익성이 있는 활동 또는 직업에 임할 수 없고, 이윤 형성을 목표로 하는 관리, 감독 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소속될 수 없으며, 연방 또는 州 정부 및 입법 기관에 속할 수 없고,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재판 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없다(제23조 2항). 또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물을 연방내무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연방내무장관은 그러한 선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진다(제23조 3항). 그리고 연방정보위원회는 자신에게 정보를 제공

32) 연방정보위원회의 조직에 대해서는 <http://www.bfdi.bund.de/DE/BfDI/Dienststelle/Organisation/organisation-node.html>.

33) 다만 연방내무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방위원회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한 자와 제공된 정보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연방정보위원회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연방정보위원회의 직원들도 또한 거부권을 가지게 되며, 그와 같은 증언거부권의 범위 내에서 연방정보위원회는 기록 또는 기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지 아니한다(제23조 4항). 그리고 연방정보위원회는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재임시 취득한 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연방정보위원회는 연방내무장관의 허가없이 법원 내외에서 발언·진술을 할 수 없다. 그 외에 연방정보위원회는 등급 B9에 해당하는 연방공무원의 급여를 받고, 또한 연방여행비용법 및 연방이주비용법과 함께 연방장관법 제12조 6항 및 제13조 내지 제20조와 제21a조 5항의 적용을 받는다(제23조 7항).

### (3) 연방정보위원회에 의한 감독 및 제소

연방정보위원회는 연방 공공기관이 동 법 규정 및 기타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제24조 1항), 연방 공공기관은 연방정보위원회와 그 보좌관의 직무 수행을 지원해야 한다. 즉 감독과 관련한 모든 서류와 기록, 특히 저장정보와 정보처리프로그램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모든 공적 관할구역에 상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제24조 4항).<sup>34)</sup> 연방법원은 오로지 행정사항을 다루는 경우에만 연방정보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제24조 3항). 연방정보위원회는 감독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지해야 하고, 그 통지에는 정보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 특히 개인정보의 처리 또는 사용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때 동 법 제2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제24조 5항).

연방정보위원회가 동 법의 규정 및 기타 정보보호규정의 위반 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연방정보위원회는 이에 대해 연방행정의 경우에는 해당 최고연방관청에, 연방철도청의 경우에는 그長에게, 법률에 의해 독일연방우편 특별기금으로 설립된 기업이 우편법에 따라 독점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에, 공법상의 연방법인, 시설, 재단 및 그들 협회의 경우에는 그 이사회 또는 대표협회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기한을 정

34) 단 연방 또는 지방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정보나 검사에 대한 개별적인 사건을 위해 설립된 연방최고관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고 그 기한 내에 답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공법상의 연방법인, 시설, 재단 및 그들 협회의 경우 연방정보위원회는 동시에 해당 감독 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제25조 1항).<sup>35)</sup> 해당 기관의 답변 내용에는 연방정보위원회가 제기한 이의에 대한 조치로서 취해진 결과가 포함되어야 하며, 공법상의 연방법인, 시설, 재단 및 그들 협회의 경우 연방정보위원회에게 전달된 답변서의 사본을 해당 감독기관에도 제출해야 한다(제25조 3항).

#### (4) 그 밖의 연방정보위원회의 의무

연방정보위원회는 2년마다 연방의회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를 통해 연방의회 및 대중들에게 정보보호 분야의 주요 진전 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26조 1항). 또한 연방정보위원회는 연방의회 또는 연방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의견서를 작성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시 연방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제26조 2항). 연방정보위원회는 동 법 제12조 1항에 명시된 연방기관에 대해 정보보호의 개선을 위한 제안 및 정보보호 사안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으며, 동 법 제25조 1항 1호 내지 4호에 명시된 기관들은 그러한 제안 또는 조언이 그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방정보위원회로부터 이를 통지받는다(제26조 3항). 연방정보위원회는 주(州) 내에서 정보보호규정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공공기관 및 동 법 제38조에 따른 감독청과 협력하고, 동 법 제38조 1항 4문과 5문이 준용된다(제26조 4항).

#### 나. 감독청

州 정부 또는 그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정보보호를 감독할 책임 있는 감독청을 정하게 된다(제38조 6항). 동 법에서 정하는 감독청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감독청은 정보위원회와 정보처리자의 일반적인 요청에 따라서 조언과 지원을 하고,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또는 사용

35) 다만 연방정보위원회는 위반사항이 중요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개선된 경우에는 이의 제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의 답변요구를 생략할 수 있다(제25조 2항).

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감독청에 호소할 수 있으며(동 법 제21조 1문 준용), 감독청이 동 법의 규정 또는 기타 정보보호규정의 위반을 확인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그 통지 및 형사소추 또는 처벌권 있는 기관에 대한 고발 권한을 가지고, 그 위반이 중대한 경우에는 기업감독청에 대한 고발 권한을 가진다. ② 피감독 기관 및 그 책임자는 감독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감독청의 임무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다만 정보제공의무자는 그 자신 또는 민사소송법 제383조 1항 1호 내지 3호에 따라 임명된 자를 형사소추 또는 질서위반법 상 소송의 위협에 노출시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절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은 정보제공의무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제38조 3항). ③ 감독청에 의해서 감독 권한이 부여된 자(이하 ‘권한대행자’)는, 감독청의 지시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또는 영업시간 중이라도 당해 기관의 관할 구역과 사무실에 입장할 수 있는 권한 및 그곳에서 검사와 감찰을 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한 권한대행자는 영업 서류들, 특히 제4g조 2항 1문에서 정하는 내역과 저장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 프로그램을 조사할 수 있다. 동 법 제24조 6항이 준용된다. 정보제공의무자는 위 조치들을 따라야 한다(제38조 4항). ④ 동 법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감독청은 확인된 기술적 조직적 하자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sup>36)</sup>

#### 다. 사전신고의무 등

「연방정보보호법」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정보처리자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자동화된 정보처리절차는 ‘그 시행 전에’ 민간기관은 해당 감독청에, 특히 연방의 공공기관과 우편 및 통신기업은 연방정보위원회에 동 법 제4e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해야 한다(제4d조 1항).

36) 구체적으로는 중대한 위반 또는 하자가 특히 인격권에 대한 특별한 위협과 관련이 있는 경우, 감독청은, 그 위반이나 하자가 동 조 제1문에 따른 명령에 반하고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기간 내에 제거되지 않는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및 사용 또는 특별한 절차에 의한 개인정보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감독청은 정보보호위원이 직무수행이 필요한 전문지식과 신뢰를 갖추지 않은 경우 그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제38조 5항).

그리고 동화된 정보처리가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특별한 위협을 야기하는 경우, 특히 그것에 의해 정보주체의 인격이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정보보호위원회는 사전 평가를 수행해야 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이에 관해 해당 감독청에 문의해야 하며, 특히 우편 및 통신기업은 연방정보보호위원회에게 문의해야 한다(제4d조 5항, 6항). 마지막으로 책임기관의 일정한 그룹을 대표하는 직업단체 또는 그 밖의 협회는 정보보호법 규정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행동강령안을 주무감독청에 제출할 수 있고, 그 감독청은 제출된 행동강령안이 현행 정보보호법에 합치하는지를 평가한다(제38a조 1항, 2항).

## IV. 프랑스

### 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개관<sup>37)</sup>

프랑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은 1978년에 제정된 이른바 「정보처리·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Loi n°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이하 '정보처리법')<sup>38)</sup>이다. 1960년대 이후 프랑스에서는 공공부문의 전산화가 급속하게 구축되고 이를 통한 행정의 효율화가 달성되고 있었다. 즉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이 행정권을 입법권으로부터 독립시킴으로써, 행정입법 또는 간결한 내부결정에 따른 정보자동화 체계로의 변화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다. 예컨대 1967년에 세무당국의 전산망이 구축되었고, 1969년에는 국민의료보험의 전산화가 이루어졌으며, 1970년에는 운전자파일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보의 전산화를 통한 행정효율성의 확대는 다른 한편으로 그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가

37) 프랑스의 「정보처리법」과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에 관한 보다 자세한 것은 <http://www.cnll.fr/> 참고.

38) 이하 프랑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제정 과정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해외 개인정보보호 집행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동향 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2, 79쪽 이하; 2012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09쪽; <http://privacy.kisa.or.kr/privacy/down/%C7%C1%B6%FB%BD%BA.pdf> 참고.

침해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았다. 결국 1974년에 이른바 「사파리(SAFARI) 법안」<sup>39)</sup>이 발표되었을 때는 강력한 여론의 비판과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는 국사원 부위원장, 파기원 제1의장, 법학교수, 국사원 위원과 변호사 등 각 분야 10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 위원회로 하여금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의 정보기술발달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고, 1975년 6월에 그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및 그 적용을 감독할 독립기구의 설립을 주장하였다. 이후 위원회의 보고서에 기초한 정부의 법률안이 1976년 8월에 국민의회에 상정되어 1977년 10월에 부분 수정을 거쳐 국민의회를 통과했으며, 1977년 11월에 상원에서 마찬가지로 부분수정 후 통과되었다. 이에 1978년 1월에 드디어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정보처리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2004년 8월의 개정은 1995년의 「EU 개인정보보호 지침」의 국내법화를 위한 것으로 법 내용이 대폭 수정되었다.

프랑스의 「정보처리법」은 크게 법률의 적용범위 및 정보처리의 적법성에 관한 규정,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한 규정과 정보처리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40)</sup> 첫째, 정보처리법은 자동적·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보처리에 적용되고,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도 적용되며, 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에 한정되고, 따라서 법인의 정보는 보호대상에서 배제된다(제2조). 정보처리가 적법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충실하고 공정·적법하게 수집 및 처리되어야 하고, 정보수집의 목적이 특정됨은 물론 명백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제6조). 둘째, 정보의 주체는 직접 정보처리자에게 접근하여 정보를 취득,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제39조), 제3자에게 정보열람을 요청하고 그 결정으로 정보에 접근하는 것도 가

39) “사파리 법안”은 다양한 행정제도의 도입을 통해 국가가 보유하는 개인신원확인대장을 모든 행정기관으로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부계획을 구체화한다.

40) 이하 “정보처리법”에 관하여 <http://www.cnil.fr/documentation/textes-fondateurs/loi78-17/> 참고.

능하다. 모든 자연인은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정보처리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로써 반대할 권리를 가진다(제38조). 정보주체가 자신임을 증명하는 모든 자연인은 정보처리자로 하여금, 부정확·불완전한·모호한·소멸된 개인정보 또는 그것의 수집·활용·전달 및 보관이 금지된 개인정보가 정정, 보완되고, 명백히 되도록, 그리고 차단 또는 삭제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제40조), 자신의 정보가 처리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권도 가진다. 셋째, 정보처리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CNIL)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5조, 제26조, 제27조). 또한 정보처리가 허가대상이 아닌 경우, 제36조 2항 상의 '정보처리의 목적이 오로지 고문서의 장기보관인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의 자동처리를 동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제22조). 그 외에 정보를 공정하고 적법하게 수집하고 처리해야 하며(제6조), 정보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7조), 정보주체에게 법률이 정하는 소정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제32조).

## 2.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인사 및 조직

프랑스에서는 「정보처리법」 제6조에 근거하여 동 법을 관장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로서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CNIL)가 설립되었다. 동 법 제11조 1항은 본 위원회가 독립행정위원회(une autorité administrative indépendante)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1조에 의하면 본 위원회의 권한행사는 어떠한 기관의 지휘도 받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프랑스의 정보처리법 상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인사 및 조직 체계로서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에 대하여 관련규정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가. 위원회의 구성 및 독립성

위원회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를 대표하는 1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1인의 위원장과 2인의 부위원장을 선출하며, 위원장의 임기는 5년이다. 특별위원

회는 위원장과 선출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제13조 I). 위원들의 임기는 5년이고,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나, 다른 직에서 임기가 정해진 위원은 그 임기까지만 재임할 수 있다(제13조 II). 그리고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구성하는데, 전체 구성원(직원)들이 정보처리법의 2004년 개정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위원회의 사무국은 사무국장을 비롯한 총 5개의 국(Direction), 즉, 준수국, 권리보호와 제재국, 기술과 혁신관리국, 공공조사국, 재정관리국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준비한 의제와 관련하여 주당 1회의 총회와 제재위원회를 열고,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안과 법령에 대한 검토가 많은 회의에서 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다.<sup>41)</sup> 그리고 행정기관으로서 위원회는 어떠한 국가조직의 위계질서에도 구속되지 않고, 어떠한 행정감독도 받지 않으며, 나아가 그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임무수행 및 권한행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기관으로부터도 명령을 받지 않는다(제21조 1항). 이러한 위원회의 독립행정위원회로서의 특징으로는 그 권한으로써 독단적인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소속은 공법인인 국가에 속하며, 사실상 국가에 속하는 국가조직이지만, 결정권 행사에 있어 수상, 장관 등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들 수 있다.<sup>42)</sup> 그에 반해 행정 각부의 장관, 공공기관, 공기업 및 사기업의 경영진, 단체의 책임자, 정보의 처리 및 축적시스템의 보유자와 이용자는 위원회의 업무활동에 용이한 필요조치를 해야 하며, 위원회의 검사과정에서 정보를 얻은 자는 위원회가 임무수행을 위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제21조 2항, 3항).

#### 나. 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정보처리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제11조 1항 2호), 개인정보와 관련한 공공부문과

41)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해외 개인정보보호 집행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동향 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2, 207쪽.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nil.fr/linstitution/qui-sommes-nous/services/>) 참조.

42)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해외 개인정보보호 집행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동향 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2, 204쪽.

민간부문 모두를 관리·감독한다. 따라서 모든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관장하게 되고, 다만 국방·안보 분야에서만큼은 동 법의 규정이 부분적으로 적용된다. 위원회의 주요 권한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처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신고를 접수하고, 정보등록부를 관리 및 공개한다. ② 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감독과 관련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정보시스템의 안전을 위한 명령 내지 지침을 부과하며, 범위반자에 대한 경고조치 및 형사고발을 하고, 위원회 의결 또는 결정 후 처리상황을 확인한다. ③ 보편적인 정보처리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고, 법규적 성격의 결정을 마련한다. ④ 접근권과 정정권 보장을 위해,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방법의 용이성을 확보하고, 공공기록에 대한 간접적 접근권을 행사한다. ⑤ 피해구제와 관련해, 각종 이의제기, 신고 및 신청사항 등의 민원을 처리하고, 사전 사실조사를 실시하거나 범위반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며, 경고, 제소, 기각 등의 결정을 하고, 분쟁사항에 대한 화해 및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도모한다. ⑥ 관련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한다. ⑦ 개인정보와 관련된 입법안을 심사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정부에 대해서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한다. 그 외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술 발달에 따른 각종 연구 및 조사를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 및 언론자료 배포와 각종 위원회의 발간물을 작성하며, 나아가 국내 유관기관과 협력할 뿐만 아니라 EU 해외의 개인정보보호 기구와 국제협력을 강화한다.<sup>43)</sup>

## V. 영국

### 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개관

#### 가. 개인정보보호 규율체계<sup>44)</sup>

43)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해외 개인정보보호 집행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동향 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2, 208-214쪽.

44)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해외 개인정보보호 집행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동향 조사, 개인정보

영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으로서 1998년에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sup>45)</sup>이 제정·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당시의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유럽이사회(1981년)의 「사적정보의 자동화 처리와 관련된 개인의 보호를 위한 협약」<sup>46)</sup>에 근거한 1984년의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84)이 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1995년의 「EU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제정함에 따라, 영국이 이를 국내법에 반영한 1998년의 정보보호법을 다시금 채택한 것이다. 무엇보다 1984년의 「정보보호법」과 1998년의 「정보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전자는 그 대상을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한정했지만, 후자는 수기된 정보까지를 포함한다. 둘째, 전자는 정보관리자로 하여금 모든 개인정보 처리행위를 사전에 데이터보호등록부<sup>47)</sup>에 등록하도록 했지만, 후자는 신고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전자에서의 데이터보호등록청장은 후자에서 데이터보호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셋째,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전자는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을 규정하였으나, 후자에서는 정신적 손해도 배상범위에 포함되었다.

나아가 1998년의 「정보보호법」은 이후 2000년의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2000)이 제정되면서 일부 개정되었고, 이때 데이터보호위원은 다시 그 명칭이 정보보호위원으로 변경되었다. 이로써 1998년의 「정보보호법」이 현재 영국의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 법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동 법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비정부 독립감독기구로서 정보보호위원을 규정하고, 그에게 정보보호청의 인사 및 조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따라서 1995년의 「EU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8조 1항 2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완전한 독립성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있어

호위원회, 2012, 요약문 6쪽 및 73쪽 이하;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EU 및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연구, 2010, 29쪽 이하 참고.

45) 영국의 “1998년의 정보보호법”의 정식명칭은 “An Act to make new provision for the regulation of the processing of information relating to individuals, including the obtaining, holding, use or disclosure of such information”이다.

46)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ETS No. 108, 28. 01. 1981).

서도 무리 없이 지켜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정보주체가 일정한 유형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정보보호위원회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칫 소송절차에서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는 정보주체를 조력하고 있다. 또한 실무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정보보호위원회에 부여됨으로써 독립성이 담보된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가 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점들은 법률이 정보보호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시적으로 강화하고 보장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이해된다.<sup>47)</sup>

#### 나. 「정보보호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

영국의 「정보보호법」은 총 6장(Part), 75개 조(Section)와 16개 부칙(Schedule)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PRELIMINARY)으로서 동 법 내에서의 용어 정의(제1조 내지 제3조), 정보보호의 기본원칙(제4조), 적용범위(제5조) 및 정보보호위원과 정보보호법정(제6조)에 대해 규정한다. 제2장(제7조 내지 제15조)에서는 정보주체 및 기타인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3장(제16조 내지 제26조)은 정보관리자에 의한 통지와 관련하여 규정하며, 제4장(제27조 내지 제39조)에서는 제2장 및 제3장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들 (및 규정들)의 적용예외(면제)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5장(제40조 내지 제50조)에서는 집행과 관련하여, 제6장(제51조 내지 제75조)에서는 기타 및 일반규정에 관해서 규정한다. 그 밖에 16개 부칙에서 각각의 관련규정들에 대해서 다시금 규율하고 있는데, 특히 제5부칙에서는 제6조와 관련하여 제1장에서 정보보호위원의 지위와 역할, 재직기간 및 임금 등과, 정보보호청의 임원 및 직원의 임명 등에 대해, 나아가 정보보호위원의 날인인증, 자금조달, 회계 및 스코틀랜드에

47) 영국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률로는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2000), 「프라이버시와 전자통신규칙」(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Regulations, 2003), 「환경정보규칙」(Environmental Information Regulation, 2004) 및 「공간정보규칙」(INSPIRE Regulation, 2009)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경찰법」(Police Act, 1997)과 「소비자신용법」(Consumer Credit Act 2006)에서도 각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의료기록에 대한 접근법」(Access to Medical Records Act 1988)과 「의료기록에 대한 접근법」(Access to Health Records Act 1990) 역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에 해당한다.

서의 적용 등에 관해서 상세히 규정하고, 제2장에서 정보보호법정의 구성원들의 재직기간, 임금 및 임원과 직원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한편, 영국의 「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기업이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개인의 권리 및 자유와 균형을 이루는 기업 자신의 정당한 이익(legitimate interests)을 증명하는 경우, 정보보호청(ICO)이 이른바 「빅 데이터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데이터처리를 허용했다는 점이다. 즉, 종래에는 기업이 개인정보처리를 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 내지 법원의 명령이 요구되는 경우 이러한 요건 하에서만 그 처리가 합법적인 것으로서 허용되었다면, 이제는 그 같은 요건 대신 기업이 개인의 권리 및 자유와 균형을 이루는 기업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증명함을 요건으로 하여 빅 데이터 영역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을 기업과 개인의 균형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그 실질적인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sup>48)</sup>

## 2.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인사 및 조직

### 가. 감독기관: 정보보호위원회와 정보보호청(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sup>49)</sup>

「정보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동 법과 2000년의 정보자유법의 목적상 정보(보호)위원이라는 감독기구를 두어야 하고, 정보보호위원회는 여왕이 칙허장에 의해 임명하게 된다(동 조 제1항 및 제2항). 정보보호위원을 중심으로 하는 감독청(이하 '정보보호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및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감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여왕이 임명하게 되는 정보보호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두 번의 재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보호위원회는 최대 15년간 그 직을 유지할

48)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것은 <https://ico.org.uk/media/for-organisations/documents/1043723/summary-of-feedback-on-big-data-and-data-protection-and-ico-response.pdf> 참고.

49) 이하 정보보호위원 및 정보보호청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것은 <http://www.ico.gov.uk/> 참고.

수 있다. 또한 정보보호위원의 정년은 65세이다. 따라서 최대 15년의 재직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만료 전이라 하더라도 정보보호위원의 연령이 6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 정보보호위원은 사퇴해야 한다(동 법 제5부칙 제2조 1항 내지 4항). 그리고 정보보호청 내에는 집행부와 4인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보보호위원이 집행위 구성원 및 4인의 비상임이사와 기타 직원을 임명하고, 이들의 보수와 근무 조건 등도 정보보호위원이 결정하게 된다(동 법 제5부칙 제4조 1항, 2항).<sup>50)</sup> 운영위원회는 정보보호위원에게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부여된 법적 의무의 이행을 지원하며, 분기당 1회의 회의를 연다.

#### 나. 감독기구의 독립성

정보보호위원은 여왕에 의해 임명되고(동 법 제6조 2항), 그 정보보호위원이 정보보호청의 임원, 간부직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진다(동 법 제5부칙 제4조 1항). 비록 국무장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동 법 제5부칙 제8조 이하), 정보보호위원과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않으며(동 법 제5부칙 제1조 2항), 정보보호위원은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의회에 직접 보고한다. 즉 정보보호위원은 어느 국가기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그가 스스로 정보보호청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보호위원의 임금 및 연금과 각종 예산은 하원의 결의에 따라 결정되고, 그 지급은 통합기금(Consolidated Fund)을 통해 이루어진다(동 법 제5부칙 제3조). 다만 정보보호위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위원을 중심으로 한 정보보호청은 당연히 공적 임무를 담당하며, 정보보호위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그러한 공적 임무, 즉 정보보호를 위한 기능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다. 감독기구의 권한과 기능

「정보보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정보보호위원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50) 2015년 7월 현재 집행부는 정보보호위원을 중심으로 부청장, 부위원 3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4인의 비상임이사직가 있다.

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감시·감독하며, 또한 동 법 뿐만 아니라 「정보자유법」, 「프라이버시와 전자통신규칙」, 「환경정보규칙」 및 「공간정보규칙」 등을 아울러 관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위를 가진 정보보호위원을 위시한 정보보호청의 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주요 권한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관리자의 이름 또는 그 기관의 명칭과 주소, 정보처리의 목적, 수집·보유하고 있는 정보항목과 정보를 제공받는 자, 그리고 정보의 역외이동시 그 이동 국가 또는 지역 등을 등록부에 등록하고, 이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동 법 제16조 내지 제21조). ② 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관리자로부터 등록신고<sup>51)</sup> 위한 통고를 받은 경우(동 법 제18조 또는 제20조), 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관리자에 의한 정보처리가 정보주체에게 중대한 손해 또는 심각한 고통을 초래할 가능성 및 그 밖에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한 정보처리가 동 법이 정하는 바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예비평가를 해야 한다(동 법 제22조). ③ 어떠한 개인정보처리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받았다고 믿는 자는 정보보호위원회에 해당 처리의 동 법 준수 여부에 대한 사정을 요청할 수 있다(동 법 제42조, 제43조). 이때 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처리자에게 정보통지를 발부하여 동 법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자료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 그러한 정보통지에는 이의제기권(동 법 제48조)의 세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따라서 정보관리자가 정보자료제공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정보관리자가 동 법이 정하는 정보보호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경우 또는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정보보호위원회가 인지한 경우에, 정보보호위원회는 집행통지를 통해 정보관리자에게 특정된 시간 내에 일정한 절차를 취하거나 또는 특정된 시간의 경과한 후에 일정한 절차의 이행을 금할 것, 특정된 시간의 경과 후에 어떠한 개인의 정보 또는 통지에서 특정한 개인의 정보처리를 금할 것, 혹은 이들을 특정한 목적이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할 것을 통보(송달)할 수 있다(동 법 제40조). 이때 집행통지에는 정보관리자가 위반한 또는 위반했다고 확인되는 정보보호 기본원칙들에 대한 기술 및 정보보호위원회가 그러한 결

51) 등록된 정보의 유지는 적정기간(the relevant time, 통상 12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 법 제16조 내지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될 수 있다.

론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정보관리자에게 인정되는 이의제기권에 관한 세부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동 법 제48조). 따라서 정보관리자가 정보보호위원의 집행통지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밖의 정보보호위원의 일반적 의무에 대해 동 법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sup>52)</sup>

## VI. 소결 및 시사점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영국은 동일한 지침이나 법률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해서 모두 적용하고 있다. 다만 연방제국가인 독일은 연방차원뿐만 아니라 각 州 차원에서 다수의 개인정보보호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으로 다소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음으로 외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사·조직체계를 살펴보면,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는 개인정보를 관리·감독하는 독립된 전담기구를 두고 있다. 다만 독일의 경우와 같이 연방차원에서는 연방정보위원이 통합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임무를 수행하지만, 州 차원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청과 민간부문에 대한 감독청을 별도로 두는 경우도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를 전담하는 독립된 기구를 두는 나라들에 있어서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이러한 개인정보보호기구에 대해서 높은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라는 목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관리·감독기구의 인사상·조직상 독립성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의 개인정보 관련 법제와 인사 및 조직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의 강력하고도 명확한 권한과 책임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권한 강화와 더불어 독립성의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개인정보보호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담당자들에게 필요한 권한과 자원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가 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개

52) 정보보호위원회는 다양한 실무규범(Code of Practice)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권을 가지고, 특히 일정한 유형의 소송에 대해 소송지원이 가능하다(동 법 제53조 1항).

인정보보호 담당 조직 내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화형성과 책임성 강화가 중요하다. 다섯째,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위탁관계에서 책임성 강화를 위한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정부기관의 관련 단체나 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강화되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에 제3의 기관이나 단체 등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2015 International Compendium of Data Privacy Laws, BakerHostetler, 2015.
- Adam Kardash/Bridget McIlveen, Oser, Canada - Data Protection 2015, ICLG, 2015.
- Bureau of Consumer Protection, Privacy & Data Security Update (2014), 2015.
- Christine Carron, Canada amends federal data protection law, PIPEDA, Ddata Protection Report, nortonrosefulbright, 2015.
- Federal CIO Council Privacy Committee, Best Practices: Elements of a Federal Privacy Program Version 1.0, June 2010.
- Jean Slemmons Stratford & Juri Stratford, Data Protection and Privacy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IASSIST Quarterly 1998 Vol. 22, 1998, pp. 17-20.
- Lisa J Sotto/Aaron P Simpson, Data Protection & Privacy(United States), Hunton & Williams, Law Business Research, 2015, pp. 208-214.
- Nancy Holmes, Canada's Federal Privacy Laws, Law and Government Division, 2008
- OAIC, Annual Report 2013-14, 2014.
- OAIC, Privacy Regulatory action policy, 2015.
- Peter Leonard/Michael Burnett, Chater 2 : Australia,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to: Data Protection 2015(2nd edition),

GLG, 2015, 7-16.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해외 개인정보보호 집행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동향 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2.

개인정보위원회, 2012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2012.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EU 및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및 감독체계 개편 내용 분석”, 2014. 12.

김상찬·강재정, “빅데이터 시대의 온라인 마케팅과 개인정보 보호”, 「법과정 책」 21권 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5, 97-126쪽.

김재광, “영미법계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동향 및 함의”,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2005, 109-153쪽.

이민영 외, 해외 개인정보보호 집행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주요 동향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2

이인호 외, 개인정보감독기구 및 권리구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산원, 2004.

함인선, “EU개인정보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통권 제133호(2012. 12), 5-38쪽.

[Abstract]

## A Study on Data Protection Laws and Supervisory Bodies in Europe

Kim, Bong-Su

*Ph.D., Professor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European Union, Germany, France and Britain set up each introduced permanent supervision organs, which are indeed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nd check this on their own. However, is noted that in the state, as in Germany, where applicable, the Federal Commissioner, who is to be chosen as legal guardians in the Federation, and the regulatory authorities, in each case apart responsible for public bodies and for private parties relevant countries are, at the same time are. The countries currently produced in particular the high level autonomy of the supervisory bodies is gewährleisten. Because the objective of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can only be realized if the complete independence of the supervisory bodies is assured under least of personnel and organizational standpoint. Be established definitively by reference to foreign laws and supervisory bodi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the following points: first,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supervisory bodi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must in particular be stronger and clearer ensured with legal support. Secondly, the high degree of independence of the supervisory bodies must be simultaneously secured. Third, the agent who possesses the professionalism of data protection, also the necessary powers to be granted. Fourthly, in the interior of the Board of Supervisors as well as the mood and accountability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re to Betonnen. Fifthly, in a contract relationship with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requires the effort and strategy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the officer. In addition,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relevant institutions and authorities with regard must be more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Moreover, the participation of an institution or an association can positively join as third parties on the Board of Supervisors for personal data protection into consideration.

**Key words** : Personal data, personal data protection, the supervisory body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privacy committee, EU Data Protection Regulation